#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17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이만희·구자근·서천호

엄태영 · 강선영 · 최은석

서명옥 • 이성권 • 김기웅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극심한 피해

에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외 4개 시군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 단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지역 추가 지정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수립 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 신설 등).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또는 제2항에"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부터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하 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 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 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 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 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 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군 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④ 제1항부터 <u>제3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 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u>(5)</u>		<u>제4항까</u>	-지에서
	•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 ① (현행과 같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포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 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6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 할 수 있다.
- ③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